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7063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83,419원 및 그중 34,756,520원에 대하여 202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는 2023. 5.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8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198,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0%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소외 E은 2023. 4. 26.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있던 렌트카 영업직원 F에게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3) 이후 F이 2023.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서 및 리스계약 관련 필요 서류를 전달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고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을 거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것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E이 대신하였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E에게 대표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E의 행위는 피고의 위임에 따른 대리행위에 해당하느바, 피고는 본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리스료를 연체하여 2024. 4. 22.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소외 회사는 2024. 6. 27. 기준으로 원고에게 ① 중도해지 수수료 31,512,046원, ② 연체리스료 2,944,475원, ③ 차량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수리비 300,000원, ④ 연체리스료 및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지연배상금 826,899원 등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35,583,419원의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경영자는 E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차량이 출고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서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피고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 E, 렌트카 영업직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서명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E이 피고의 서명 등을 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은 유효한 방식에 의한 보증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